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전임교원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채용의 원칙) ① 신규임용되는 전임교원(이하 ‘신임교원’ 이라 한다)의 임용절차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은 국내외 학자를 초빙하거나 대학 특성화 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따라 특정분야의 전문가, 우수교원 등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특별채용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채용 여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며, 구체적인 임용절차는 「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초빙규모 및 분야의 결정) ① 신임교원의 초빙규모는 본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초로 교원확보율, 본교 정책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각 학과(부)(이하 ‘학과’ 라 한다)는 교수회의를 통하여 초빙분야 등 신임교원초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뒤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충원요청서를 제출한다.

③ 학과의 충원요청사항에 대한 결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④ 대학 특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등 학교 정책에 따라 특정분야 교원충원이 필요하거나 교원충원의 긴박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학과의 요청이 없어도 교무처장은 교원초빙계획을 수립하여 각 학과에 충원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 장 임용절차

제4조 (초빙공고) 신임교원 초빙공고는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초빙분야초빙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본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지원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임교원 초빙지원서
2.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부 및 대학원)
3. 경력증명서
4.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물 200% 이상(단, 계약제 신임교원 초빙분야 또는 초빙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5. 향후 2년간 연구계획서(계약제 신임교원의 경우 교육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학위논문(석·박사) 및 요약본

7. 최종학위논문 지도교수추천서
8. 세례증명서(교회출석증명서도 가능)
- ② 교육 및 연구, 실무경력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만 인정하며 연구실적은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것만 심사대상으로 한다.
- ③ 최종학위논문 지도교수추천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동일분야 전문가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외국인 교원, 교육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을 초빙하는 경우, 초빙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서류의 일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신입교원 초빙을 위한 지원서류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절차) 신입교원의 임용은 다음의 각 호의 심사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전공심사 : 기초심사(임용후보자의 전공과 초빙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및 기초 심사를 통과한 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심사
2. 강의평가 : 전공심사를 통과한 임용후보자의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제7조 (전공심사위원회) ①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위원 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고, 전공심사위원은 초빙분야 학과 교원 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 교원 2인과 외부전문가 1인 등 3인으로 한다. 단, 필요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소속 및 수 등을 조정하여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외부전문가는 학과 교원 및 타대학의 추천 등으로 구성된 후보자 중 총장이 1인을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삭제>

④ 지원자의 지도교수 또는 추천인 등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전공심사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전공심사) ① 전공심사위원회는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용후보자의 전공과 초빙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를 심사하는 1차심사(기초심사)와 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2차심사를 실시한다.

1. 1차심사 : 지원자의 세부전공, 석·박사학위논문과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초빙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기타 적합성 등을 심사한다. 1차심사에서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절차 및 평정기준」에서 정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지원자는 2차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2차심사 : 1차심사를 통과한 임용후보자에 한하여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과 경력 등을 아래의 항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학력

나. 학위논문

다. 경력(교육, 연구, 실무 등)

라. 연구실적

마. 전공영역 적합성(연구계획의 질, 발전가능성, 추천서 등)

② 초빙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일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평가항목별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절차 및 평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전공심사위원장은 심사종료 후 심사결과를 최종 확인하며 초빙분야별로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작성하여 심사관련 서류일체와 함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의2 (인사공정관리위원회) ① 신입교원 초빙을 위한 전공심사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무처장은 불편부당하고 학문적 식견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교원 중에서 각 계열별(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로 2인씩 총 6인의 교원을 공정위원 후보자로 추천하며, 이 중에서 3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인사공정관리위원은 각 계열별로 1인을 위촉하되, 특정계열의 초빙분야가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계열별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1인으로 한다.

④ 공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심사 평가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검증
2. 전공심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
3. 기타 전공심사 관련 제반사항 검토

⑤ 공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검증을 시행한다.

1. 교무처장은 전공심사를 마친 전 분야에 대하여 공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검증을 요청한다.
2.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전공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시행한다.
3. 공정위원회 심사검증 시 특정 지원자에 대한 평가위원 간 점수차가 극심하거나 심사의 적정성, 공정성 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적정으로 판정할 수 있다. 부적정 판정시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구체적인 판정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4.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초빙분야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의견이 기재된 심사검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⑥ 교무처장은 전공심사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검증결과보고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공정위원은 심사검증 과정 중에 알게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제9조 (강의평가)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전공심사결과 및 공정위원회의 심사검증결과보고서 등을 심의하여 분야별 3배수의 인원을 강의평가 대상자로 정한다. 단, 전공심사 결과 초빙분야에 적합한 책임자가 3배수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 배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공정위원회의 심사검증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전공심사 중 1차심사 통과자 전원을 강의평가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③ 분야별 강의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위원 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고, 강의평가위원은 초빙분야 학과에 재직 중인 정년제 교원 전원으로 한다. 다만, 학과에 재직 중인 정년제 교원이 6인 미만인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분야 전공 교원 중 부교수 이상인 자를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강의평가위원회는 강의평가 대상자의 강의준비 및 주제이해도, 강의내용, 강의전달방법, 강의태도, 질의응답, 전공관련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⑤ 평가항목별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절차 및 평정기준」에 별도로 정한다.

⑥ 강의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강의평가를 시행한 임용후보자에 한해 실시한다.

② 면접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 학장, 처장 및 교목실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맡는다.

③ 면접심사위원회는 초빙분야의 학과장 또는 학과장의 위임을 받은 교원을 면접심사에 배석케 하여 학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면접심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의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자질, 교육관,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친화성, 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1조 (강의평가 및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장) 강의평가 및 면접심사과정에 있어서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정에 참여하지 않고, 전체 심사과정을 조정하고 평정결과를 집계·종합한다.

제12조 (임용제청) 총장은 각 초빙분야별로 전공심사(2차심사), 강의평가,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한 점수 등을 고려하여 임용후보자의 순위를 확정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임용을 제청한다. 단,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면접심사결과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절차 및 평정기준」에서 정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2. 심사결과가 타후보자에 비해 현저히 미달된 경우
3. 초빙분야 학과 정년제 교원 전원의 타당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4. 심사과정 상에 중대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5.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빙분야에 적합한 책임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의평가와 면접심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분야 초빙인원의 상위 3배수에 들지 못한 경우

제13조 (임용의 기준) ① 교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은 연도 말 기준으로서 그 해까지는 누적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제14조 (임용의 유예) ① 신규임용이 확정된 자가 타대학 또는 연구소, 공공기관 등에서 연구, 고용계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일자에 부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임용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② 1항의 임용유예를 받은 자가 임용유예기간 이내에 부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임용이 취소된다.

제15조 (심사결과의 공개) 신규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시행세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과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11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14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4항 개정 <2019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5항 신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동조 제3항 삭제, 제8조 제4항 개정, 제8조의2 신설, 제9조 제1항 개정, 제9조 제2항 신설, 제9조 제2항 내지 제5항 조번호 변경,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개정, 제12조 개정 <2020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개정 <2020 제18차 교무위원회>)